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은 고쳐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안내

01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지급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인정액(원/월)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단,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

※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판단

지급기준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13,000	187,000	153,000	140,000
2인	245,000	210,000	166,000	152,000
3인	290,000	254,000	198,000	184,000
4인	335,000	297,000	231,000	208,000
5인	346,000	308,000	242,000	218,000
6인	403,000	364,000	276,000	252,000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자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구분		①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②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③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3% 이하
경보수	378만원(3년)			
중보수	702만원(5년)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대보수	1,026만원(7년)			

지급일

임차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02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5. 통장사본

※ 필요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장가구 확정,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관련문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03

신청이 집중되는 초기
(8.13~8.24)에는 상당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신청기간

8.13~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부터 급여부터 지급

(8월 말에 신청하더라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11월에 10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 분산 및 불편 경감을 위해 신청자 분산 관련 지자체 안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구원수	3인 이상	2인	1인				미신청자
신청기간	8.13~8.17	8.20~8.24	40대 이하 8.27~8.31	50대 9.3~9.7	60대 9.10~9.14	70대 이상 9.17~9.21	9.24~